

소규모 펀드 공시

2017. 9. 1.
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제4호와 제5호에 의거하여,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펀드로서 지난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소규모펀드 발생일	비율산정 대상구분
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A	K55303B01474	K55303B01482	2017-08-25	산정대상
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C	K55303B01474	K55303B01490	2017-08-25	산정대상
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Ce	K55303B01474	K55303B01508	2017-08-25	산정대상
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C-P	K55303B01474	K55303B01532	2017-08-25	산정대상
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S	K55303B01474	K55303B01557	2017-08-25	산정대상
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마이다스뉴트렌드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S-P	K55303B01474	K55303B01482	2017-08-25	산정대상

※ 상기 비율산정대상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(주)의 소규모펀드 비율 계산시 산정대상 여부를 구분한 것입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/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midasasset.com/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